

『구미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의 건 의 건 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해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 화물차량이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침해하고 있음.

주거지에 주차로 인한 주민과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구미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구미시의 화물차량 주차가능 시설은, 남구미 IC 입구 구미화물터미널(237면)과 금오산 주차장(32대)이며, 화물차량은 1,871대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외지차량의 구미산업단지 출입 등을 고려하여 구미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입지선정과 예산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로 이송코자 의결함

다 음

- 주거지의 주민과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공영차고지 확보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 수송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 운송사업자 주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반시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영차고지”의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 접근성, 경제적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